

#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설명서



## ■ 계좌개요

투자대상	▶ 펀드자산총액의 40%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집합투자증권 (청년형 전용펀드)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</li> <li>▶ 만 19~34세 개인 거주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직전 근로기간에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, 장기휴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</li> <li>② 병역복무기간 만큼 연령에서 제외 (6년 한도)</li> <li>③ 외국인도 거주자 요건에 해당 시 가입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▶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 5,000 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 만 원 이하</li> <li>▶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시 가입 불가합니다.</li> </ul>
가입한도	▶ 연간 600 만 원 (전 금융기관 합산, 다수 계좌 개설 가능)
저축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약일로부터 5년</li> <li>가입기한까지 펀드 매수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하며, 펀드 매수결제일부터 계약일로 계산합니다.</li> </ul>
가입기한	▶ 2025년 12월 31일

## ■ 가입서류

정구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</li> <li>▶ 조특법 제91조의24에 의거하여 가입신청일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명서로 적용합니다. (상반기 6월 30일 이전→전전년도 과세기준/ 하반기 7월 1일 이후→전년도 과세기준 적용)</li> <li>▶ 펀드매수결제일부터 계약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로 계좌개설 후 하반기에 펀드 매수 결제 완료 시 전년도 소득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부적격통보 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------	---

## ■ 세제혜택

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좌개설 후 최소 1 만 원 이상 매수결제되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매수결제 된 금액의 40% 까지 (연간 240 만 원 한도)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▶ 계약일로부터 3 년 이상 유지 시 만기일까지 최대 6년 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가입 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거나 가입 후 연간 총 급여가 8,000 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,700 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불가합니다. 추후 해당 금액 이하로 요건 충족 시 충족된 해당 연도부터 다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
중도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며, 중도 해지 시 총 납입액의 6.6 %의 해지추징세가 발생됩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펀드의 일부 매도는 불가하며 전량 매도 시 계좌가 해지됩니다.</li> <li>중도해지 후 가입기한 까지는 연간 한도 내에서 재가입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* 해지추징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 한도로만 추징됩니다.</li> </ul>

만기해지	<p>▶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시 세액 추징없이 만기해지 가능합니다.</p> <p>만기 이후 추가 매수는 불가하나 펀드가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으므로 고객님의 의사에 따라 계속 운용 하시다 추후 해지 가능합니다.</p>
특별해지	<p>▶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시 특별중도해지 가능합니다</p> <p>▶ 사유 발생일로 부터 6 개월 이내 특별해지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</p> <p>① 천재지변    ② 가입자의 퇴직    ③ 사업장의 폐업 ④ 가입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⑤ 최초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초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 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하는 경우</p>
부적격통보	<p>▶ 가입 후 국세청으로 부터 <b>부적격대상으로 통보 되면 계약은 해지되며, 납입 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해지추징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</b></p>

## ■ 계좌특성

입출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소 입금액은 1 만 원 입니다. (분산투자정보 등록 후 입금 가능)</li> <li>▶ 입금 후 분산투자 주문 실행 전까지 출금 가능합니다. (분산투자는 매 영업일 15:30, 17:00 2회 처리)</li> </ul>
한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도소진금액 : 당해년도 펀드 매수결제금액 + 결제일이 당해년도인 펀드 매수신청중인 금액</li> <li>▶ 납입가능금액 : 한도설정금액 - 한도소진금액 * 펀드 매수결제금액 : 선취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</li> <li>▶ 계좌에서 발생 된 분배이익금 및 재투자금액, 예탁금이용료(매수되지 않은 예수금에서 발생된 이자), 펀드수수료, 기타비용은 잔여한도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.</li> </ul>
분산투자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 계좌 1종목만 등록가능합니다. 종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최초매수 시 분산투자등록 당일 매수주문 전인 경우 가능하며, 매수주문 이후인 경우에는 전환/교체 매매를 통해 새로운 펀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(일부 매도 불가)</li> <li>▶ 예수금 잔고가 1 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수금 전액 분산투자등록된 상품으로 매수됩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당 전용계좌는 펀드판매사 이동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·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투자가능 상품은 <b>실적배당형 상품</b>으로, <b>투자원금의 손실</b>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b>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b></li> <li>·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한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, 투자성향, 목적, 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 후 신중히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

■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.

▣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관리점 및 고객센터(☎1588-6800)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